

조세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00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의자 : 안도걸 · 이재관 · 어기구

조계원 · 박군택 · 정일영

손명수 · 조인철 · 박홍배

김문수 · 조승래 · 정준호

민형배 · 박정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의 특례를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후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벤처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

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등).
- 나.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 개인벤처 간접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안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7년”을 각각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

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제3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 ·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1. 공제대상

-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
는 경우

마.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하는 경우

2. 공제금액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2억원 이하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

2)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2억원 초과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나.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의 100분의 100

2)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

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70

3)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억원 초과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

3. 공제한도

가. 제1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 중 작은 금
액

나.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제88조의4제1항 ·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
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
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 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
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
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
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p>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금액</p> <p>가. 나. (생략)</p> <p>2. (생략)</p> <p>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p>	-----

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

--. -----

-----.

1. 공제대상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 ·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마. 창업 ·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가. 제1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증 2억원 이하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5

2)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증 2억원 초과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0

나.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 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증 5천만원 이하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00

2)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증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70

3)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증 1억원 초과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30

3. 공제한도

가. 제1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 중 작은 금액

나.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
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해당 과세연도의 종
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1. <u>제1항제1호 및 제5호</u>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p> <p>2. <u>제1항제2호</u>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3. <u>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u>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u>같은 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u>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u>같은 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u>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④ (생략)</p> <p>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p>	<p>1. <u>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u>----- ----- -----</p> <p>2. <u>제1항제1호나목</u>----- ----- -----</p> <p>3. <u>제1항제1호다목 · 라목 및 바목</u>----- ----- -----</p> <p>③ ----- ----- <u>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u>----- ----- ----- ----- <u>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p>
---	---

